

2 시세(市税) · 국민건강보험 · 국민연금

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을 하여 일정한 수입이나 자산을 얻은 경우에는 일본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
또한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적은 자기부담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있습니다. 국민건강보험은 그중 하나입니다. 일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공적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
(1) 시세(市税)

시민세과, 고정자산세과, 납세과

●시세의 종류 【문의처】 시민세과, 고정자산세과

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시세(市税)를 시민세라고 합니다. 1 월 1 일 기점으로 주소를 두고 있던 지자체에 전년도의 소득에 따른 세액을 주민세로 납부하게 됩니다. 회사 급여에서 자동으로 주민세가 공제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년 6 월에 시청에서 납세 통지서가 발송됩니다. 소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
시세는 시민세 외에 토지, 가옥 등을 소유하고 있을 때(고정자산세, 도시계획세), 경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을 때(경자동차세) 부과됩니다.

●시세의 납부 【문의처】 납세과

시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모든 세금에는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.

납부 방법	설명
납부서 지불 납세통지서를 이용하여 지불하는 방법	○은행이나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. ○바코드가 있는 납부서는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. (납부기한 내)
계좌 이체	금융기관 창구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용카드 결제	스마트폰, 태블릿 기기 등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 ※바코드가 있는 납부서가 필요합니다.

(2) 국민건강보험/후기고령자의료제도

각 구청 구민과, 국보연금과

●가입 안내 【문의처】 각 구청 구민과

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 전원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 시 안심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제도입니다.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과 그 부양가족,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외에는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

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고령자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. 만 75 세부터는 모든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과 사회보험에서 탈퇴되고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. 만 65 세 이상으로 일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●**급부 안내 【문의처】 각 구청 구민과**

국민건강보험과 후기고령자의료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증을 교부합니다.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보험증을 제시하면 연령 대비 부담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외에도 출산했을 때나 사망했을 때, 또는 고액의 의료비가 청구된 경우에는 시청에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●**특정건강진단 【문의처】 국보연금과**

만 40 세~만 74 세까지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생활습관으로 인한 성인병의 조기 발견과 중증화 예방을 목적으로 한 건강검진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

또한 후기고령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성인병과 프레일(고령자의 체력 저하) 예방을 위한 후기고령자 건강검진과 치과 구강검진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 모든 건강검진에는 진찰권이 필요합니다.

●**보험료와 납부방법 【문의처】 국보연금과**

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 인원수와 전년도 소득액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액이 결정됩니다. 매년 6 월에 시청에서 납부통지서가 발송됩니다.

후기고령자의료보험료는 한 명씩 각각 부담합니다. 매년 7 월에 납부통지서가 발송됩니다.

이 납부통지서를 사용하여 은행이나 우체국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합니다. 또한 국민건강보험료는 납부기한 내라면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(3) 국민연금 **각 구청 구민과**

●**국민연금제도 【문의처】 각 구청 구민과**

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입니다. 주민 등록되어 있는 만 20 세 이상 만 60 세 미만인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. 다만 직장 후생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.

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노령, 장애, 유족이 되었을 때 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 가입은 각 구청 구민과에서 수속할 수 있지만, 연금을 수령할 때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국가기관인 연금 사무소에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.

●**국민연금 보험료 【문의처】 각 구청 구민과**

국민연금 보험료는 한 달에 17,000 엔 정도입니다. 소득이 적어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람은 신청 후 인정이 되면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납부가 유예되는 제도가 있습니다.



학생은 “학생납부 특례제도”가 있습니다. (유학생 포함)

“학생납부 특례제도”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학생 중 본인의 소득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, 신청 후 일본연금기구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승인 기간 중의 보험료를 후불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<p>“학생납부 특례제도” 신청에 필요한 서류</p>	<p>(1) 연금수첩 (2) 학생증, 재학증명서 등(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) (3) 인감도장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